

『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입주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
 - 당초 : 「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」
 - 변경 :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금오아파트폐쇄에 따른 내용 삭제 및 근로자임대아파트 명칭 정비
(안 제2조)

○ 입주대상자 범위 수정(안 제4조)

- 당초 :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
- 변경 :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

○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임대허가 취소 조항 삭제(안 제7조)

○ 임대아파트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 지원 조항 신설(안 제11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건은

- 도시화에 따른 공단지역 미혼여성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건립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노후화 및 지역경기 불황 등으로 입주율이 저조하여 입주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등 임대아파트 입주율을 증가시키고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조례 개정 후 입주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